

2021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 평가지표 FAQ

A. 시설환경 및 운영

A1-③. 생활인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책상, 컴퓨터, 개별 서랍장(사물함) 등이 구비되어 있다.

(질문) 컴퓨터가 사무실에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무업무 종료 후에는 생활인이 PC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PC를 구비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생활인 개개인을 위한 컴퓨터가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설치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이므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무실보다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에서 PC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1-⑤. 생활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방충망과 방범창(또는 잠금장치)이 설치되어 있다.

(질문) 방범창은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창문 잠금장치도 인정되는지,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동개폐기능이 있는 방범창은 설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창문 잠금장치도 잠금장치로 인정됩니다.

A2-②. 응급상황에 대한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질문) 응급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예시)이 궁금합니다.

(답변) 각 시설마다 시설의 구조,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응급상황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예시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를 참고하여 시설의 특성에 맞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A3-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질문) 지방공기업 예산 회계시스템을 사용하는 공단운영시설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지자체직영, 공단운영시설, 지자체출자출연법인 산하시설은 해당항목을 인정합니다.

A3-②. 예산서와 결산서가 연 1회 이상 공개되고 있다.

(질문)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한 증빙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하였을 경우는 평가시스템에 자동 연동되어 추가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공시하지 않고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한 화면을 캡처, 게시판에 게시한 사진자료를 증빙자료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A3-③. 회계 관련자에 대한 재정보증이 되어 있다.

(질문) 재정보증은 담당자 이름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급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업무분장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A4. 직원 교육활동비

(질문) 육아휴직 대체자의 교육활동비 및 교육시간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근무월 기준으로 산출하며 육아휴직자와 대체자의 교육활동비 및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질문) 평가대상기간 중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사한 직원의 교육활동비와 활동시간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근무월 기준으로 산출하며 퇴사한 직원의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교육비와 시간은 포함됩니다.

(질문) 아르바이트를 주 40시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직원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주40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인건비 중 일용잡급(목113)으로 지급되는 인력(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은 직원에서 제외합니다.

(질문) 2020년부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내용만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시설 자체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이중 업무가 예상됩니다.

(답변) 우리원에서는 향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관리를 진행하여, 별도 평가자료 준비가 필요 없는 평가준비의 시스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지표 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도입시점인 현재 불합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법인에서 주최한 교육에 참여하였을 시 법인에서 지출한 교육비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본 지표는 시설차원에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시설에서 지출한 교육비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A5. 직원교육 활동시간

(질문) 시설 내 워크숍 운영 시 타 시설방문을 할 경우에 교육비와 교육시간이 인정되나요?

(답변) 타 시설 방문에 소요된 경비, 시간 모두 인정됩니다.

(질문) 총회, 공청회, 설명회 참석 등도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만 인정하므로 미인정합니다.

(질문) 교육시간이 분단위로 산정될 때 입력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전체직원의 교육시간을 합산한 후 분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시간단위로 입력합니다.

(질문) 수료증에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는 교육훈련 참여 시간 산정 시 이동시간이나 식사시간도 포함하나요?

(답변) 모든 교육활동시간은 공식적인 증빙자료(공문, 수료증 등)에 명시된 교육시간만 인정하며 이동시간, 식사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A6-②. 3년 간 공개채용 비율이 100%이다.

(질문) 시설 내 승진으로 부장이 시설장으로 임명될 경우는 공개채용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본 지표에서 예외대상은 없습니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승진으로 시설장에 임명되는 경우, 해당 부장을 최초 채용 시 공개채용 하였다면 인정됩니다.

(질문) 시설 내 승진으로 임명된 시설장을 신입직원으로 봐야하나요?

(답변) 내부승진에 의한 시설장은 신입직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 신규채용이 없는 경우 어떻게 인정받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규채용이 없는 경우 공개채용에 대한 내용이 인사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설장이 법인으로부터 임명받은 성직자로, 법인에 공개채용 서류가 없는 경우 인정되나요?

(답변) 법인이사회에서 시설장을 임명(예. 순환직 직원 등)하는 경우 등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 공개모집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7. 시설장의 전문성

(질문)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회복지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되지만, 관련 과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7-①.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질문) 시설장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장 기준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본 지표에서는 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시설장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A7-②. 시설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다.

(질문) 시설장의 근무경력 산출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본 지표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을 참고로 산출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사회복지사 만 3년 이상, 선임사회복지사 만 5년 이상, 과장 만 7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시설 근무경력 산출기준을 근거로 마련한 기준으로, 생활시설은 이용시설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장 10년으로 적용하였습니다.

A7-③. 시설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이다.

(질문) 타 유형 경력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력만 인정이 되며, 타 유형 경력은 미인정됩니다.

A8-①. 직원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질문)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단, 시간외근무는 1.5배로 인정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시간의 1.5배를 대체휴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A8-③. 정기적인 내부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질문) 포상제도가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인의 포상제도나 지자체의 포상제도로 운영할 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체적으로 직원 포상을 위한 제도가 시설의 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경우 인정됩니다. 시설의 운영규정에 자체적이고 정기적인 포상제도 없이 지자체 혹은 법인의 포상 제도를 명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A8-⑤.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질문) 법인차원에서 노사협의회가 있고 산하시설 직원의 일부가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시설의 규정에 따라 고충처리를 하고 그 내용이 법인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질 경우는 인정됩니다. 직원의 고충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연2회 이상 직원 고충관련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A9-④ 후원자(금/품) 후원내역에 대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문)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의 대상기간은 후원기간이 기준인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시기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상기간인 2020년의 후원내역에 대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여부로 판단합니다.

A10-②. 직원 고용계약 시(또는 연장 시) 합당한 계약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질문) 근로기준법에 의해 최초의 근로계약을 성립한 후 변경사항이 없어도 매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계약 종료일이 없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는 직원의 경우에는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같음합니다.

B. 생활인의 권리

B1-②. 생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있다.

(질문) 시설에서 자체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은 자물쇠로 표시되며 외부반출 시 열리지 않습니다. 자체 보안프로그램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체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여도 시설 내 직원이 별도의 승인과정(파일별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B1-③. 생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B2-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내부직원이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내부직원도 해당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을 진행하는 직원은 별도로 해당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B2-③. 생활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인권교육을 진행할 때 최소 실시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요시간 상관없이 연 1회 이상 진행하면 인정됩니다. 단, 2019년까지는 온·오프라인교육 모두 인정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집합교육만 인정됩니다.

(질문) 변호사도 외부강사 교육기준에 인정되나요?

(답변) 지표에 명시되어 있는 외부강사 기준대로 적용됩니다. 변호사일지라도 외부강사 자격 기준에 준하는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B2-④.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계획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2020년의 경우 온라인 교육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인정이 되며, 온라인 교육의 경우는 수료증을 필수 지참해야 인정됩니다.

(질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서 진행하는 인권교육을 이수해도 인권교육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설 차원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보수교육의 내용과 강사기준이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인정됩니다.

C. 프로그램 및 서비스

C1-①. 학업/자립/진로지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학업, 자립, 진로지원 상담을 모두 진행해야 하는지 그 중 한 가지만 실시해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학업, 자립, 진로 중 한 가지 이상 실시하시면 인정됩니다.

C2-②. 가족캠프·나들이를 실시하고 있다.

(질문) 한부모가족복지센터에서 시설 입소자 대상 가족캠프를 진행할 시 참여한 시설들이 캠프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표의 취지는 입소자 전원이 참여하는 캠프 혹은 나들이를 의미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가족캠프의 참가대상이 시설의 가족 전체인 경우 일부가 부득이한 상황으로 미참여하더라도 인정되나, 참가대상이 전체가 아닌 일부만 참여(선발방식)하는 캠프는 미인정됩니다. 또한 내부 실행계획서와 결과보고서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C2-③. 부모교육(자녀양육, 가사)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가사교육의 강사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사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생활인도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자녀양육, 가사교육을 상담 중 개별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자녀양육, 가사교육을 꼭 프로그램화해야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담과 교육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근거서류를 마련해야 인정됩니다.

C5-①. 폭력과 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폭력교육 시 성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육계획서 및 교육자료에 폭력교육과 성교육의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실제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면 인정됩니다.

○ 기타

운영규정 관련

(질문) 법인 운영규정에 시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의 운영규정 및 지침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법인 운영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운영규정 및 지침은 그 시설의 인력, 조직, 사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인운영시설은 법인 이사회, 개인운영시설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인정됩니다.

(질문) 운영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규정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의 운영규정 분리를 진행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가시점에서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을 갖추고 있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운영규정 및 지침의 내용이 현행법, 보건복지부 등의 지침에 의한 내용이 2020.12.31.기준으로 현행화 되어있어야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